

음악대학 학생상별에 관한 내규

시행일 : 2011.9.26.

제1조(목적) 본 내규는 음악대학 학생상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 및 징계의 절차) 음악대학 학생(이하 "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표창 및 징계는 음악대학 학생상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상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행한다.

제 2 장 음악대학 학생상별위원회

제3조(학생상별위원회) ①학생에 대한 표창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악대학 학생상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위원 및 간사로 구성 한다.

②위원장은 음악대학장(이하 "학장"이라 한다)이 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위원회는 학장, 각 학과장, 기악주임교수로 구성한다.

④ 간사는 음악대학 행정실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한다.

제5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①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개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의결의 기한) 위원회는 표창 또는 징계의 심의를 요구받을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30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 3 장 표 창

제9조(표창의 종류 및 대상) 학생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표창을 받을 수 있다.

1. 학업상 : 재학 중 학업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 되는 자
2. 학술상 : 음악부문에서 우수하고 창의적 업적을 나타내어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3. 공로상 : 사상이 건전하고 지도능력이 탁월하며 음악대학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
4. 모범상 : 교내외에서 다른 학생에게 모범이 될 만한 선행을 하여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5. 기타 지도교수의 표창 추천을 받아 총장 또는 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10조(표창 추천) 제9조의 요건을 갖춘 학생을 표창 하고자 하는 해당 지도교수는 다음의 구비서류를 구비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적조서 1부
2. 지도교수 추천서 1부

제11조(표창의 방법) ① 학업상은 총장상, 학장상, 우등상으로 구분한다. 총장상은 음악대학 졸업생 중 4개년 간 학업성적평균 최고득점자에게, 학장상은 차순위 성적 취득자에게, 우등상은 전 학년 평점 평균이 4.0 이상인 자 또는 음악대학 내 성적상위 3% 이내이며 학장이 추천한 자에게 졸업시에 수여한다. 다만, 후기 학위 수여 시에는 우등상만 수여한다.

② 학업상을 제외한 표창은 前학년도 실적을 평가하여 매년 4월초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2조(결격자) 재학 중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징계의결이 요구 중에 있는 자는 표창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제 4 장 징 계

제13조(징계제청) ① 학생생활규정 제19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학장은 음악대학 학생상별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상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징계혐의자가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1. 사건경위서
2. 징계혐의자의 진술서
3. 전공지도교수 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
4. 징계사유에 대한 입증자료
5. 기타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상별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학장은 음악대학 학생상별위원회의를 소집하여 진상조사 후 징계할 수 있다.

제14조(징계의 심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개최 7일전에 징계 심의 대상이 된 학생에게 징계 심의에 회부된 사실 및 출석기일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여야 한다. 단,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징계의 심의대상이 된 학생이 2회 이상 출석 또는 서면진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서면심사에 따라 징계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징계의 양정) 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 학업성적, 개전의 정, 징계 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의 효력) ① 근신은 1주일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그 기간 중 수업 이외의 학생자치활동에의 참여를 금한다.

② 유기정학은 1주일 이상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하고, 무기정학은 3개월 이상으로 한다.

③ 유기정학 또는 무기정학을 받은 학생은 처벌을 받은 날로부터 해제되는 날까지 학생으로서의 모든 권리가 정지되고 수업을 받을 수 없다.

④ 제적은 본교 학생으로서의 신분을 상실한다.

제17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18조(재심청구) 위원회로부터 징계처분 의결을 받은 학생은 징계양정, 절차 등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처분 의결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19조(징계처분의 발효) 징계처분의 발효일자는 총장의 결재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의 발효 일자는 학장의 결재일로부터 개시하는 것으로 한다.

제20조(통보) ①시험 중 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처분 결과를 행정실장은 학장의 결재를 받은 즉시 관계부서 및 학부모, 본인에게 징계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험 중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이외의 징계처분에 대한 통보는 학생지원처장이 한다.

제21조(징계해제) 근신과 유기정학은 그 기간이 만료 되면 특별한 절차 없이 해제되며 무기정학은 징계를 받은 자가 개전의 정이 명확한 경우에 학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희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상벌위원회에 징계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 5 장 보 칙

제22조(보칙) 본 내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희대학교 학생상별에관한규정을 준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0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본 내규는 2011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